

<p>종합 정신과 응급 프로그램(CPEP) 입원을 위한 자발적 요청</p>
--

I. 자발적 입원 요건

A. 신청

자발적으로 CPEP에 입원하려면 18세 이상인 자 또는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 섹션 33.21에 따라 18세 미만이면서 미성년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서면 입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서면 입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
- 사회복지법에 따라 개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무원 또는 허가 기관(단, 사회복지법 섹션 384-a에 따라 집행된 모든 법원 명령 또는 문서의 조건을 따름)
- 행정법 섹션 509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뉴욕주 아동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 국장
- 가정법원법 섹션 756 또는 1055에 따라 해당인의 양육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승인된 대리인.

MHL 33.21에 따라 해당인이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경우, CPEP 책임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입원 신청 권한이 있는 개인이 신청하여 해당인을 자발적 환자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CPEP에 내원한 미성년자의 기준은 아래 B 파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OB에 내원한 미성년자의 기준은 아래 C 파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양식은 전자 서명 기록법(Electronic Signatures and Records Act)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으며 제공자의 전자 건강 기록(EHR)을 이용한 서명도 가능합니다. 제공자는 반드시 본 양식을 승인된 형식으로 환자, 환자의 법적 보호자 및/또는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S), 그 외 지정된 수신자에게 인쇄 및/또는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 보호자 동의 없이 내원한 미성년자의 기준

양식 OMH 476A 파트 A: 미성년자는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CPEP에서의 평가 포함)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신 건강 국장의 규정 및 MHL 33.21에 따라 허가 또는 운영되는 외래 프로그램에서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OMH에서 허가받았거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정신 건강 전문가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자발적으로 찾는 경우. 그리고
- 서비스가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웰빙에 필수적인 경우. 그리고
 - 부모 또는 보호자를 합리적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부모 또는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이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 또는 참여 요구가 외래 환자의 치료 과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또는
 -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동의에 거부하였고, 미성년자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동의를 거부되면 반드시 의사가 판단해야 함).

양식 OMH 476A 파트 C: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하고 있고 시설의 책임자가 동의하면 CPEP 연장 관찰 병상(Extended Observation Beds)을 포함하여 입원 정신과 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HL 33.21(e)에 따라 미성년자 자발적 입원 상태(voluntary status)로 병원에 입원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법원 명령 없이 정신과 약물에 대한 동의가 가능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온갖 노력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부모 또는 보호자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단, 치료 의사가 미성년자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약물이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단 치료 의사를 비롯하여 병원 소속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인 제2의 의사가 (A) 그러한 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것이고 (B) 미성년자가 동의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으며 (C) 해당 약물이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함. 또는
-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단 치료 의사를 비롯하여 병원 소속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인 제2의 의사가 (A) 미성년자가 동의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으며 (B) 해당 약물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함. 본 하위 조항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에 대한 사유는 미성년자의 임상 차트에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C. 입원의 적절성

CPEP 책임자는 해당인의 자발적 입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인이 정신 병원에서 케어와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아래 D에 설명한 대로 해당인이 자발적 입원에 적합하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 입원의 적합성

CPEP 자발적 입원에 적합하려면 당사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통지받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가 CPEP 입원 신청을 하고 있음.
- 자발적 입원 상태의 성격,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기준으로 퇴원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전원을 규정하는 조항들.

II. 자발적 입원 상태의 일반 규정

자발적 입원 상태(voluntary status)의 환자는 입원 상태 및 입원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 시점에, 자발적인 환자로서 당사자의 지속적인 체류에 대한 환자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동의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III. 18세 미만 환자의 입원, 법적 상태 전환, 전원,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S)에 통지.

18세 미만인 자가 어떤 병원이든 입원하거나 특정 입원 상태에서 다른 입원 상태로 전환되면, 3일 이내에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는 해당 입원 또는 전환에 대해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인의 연령과 입원 상태가 명시됩니다.

직접 신청하여 입원한 18세 미만의 자발적 환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원(transfer)할 수 없습니다. 단, 제안된 전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가 3일 전까지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에 제공되고,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가 환자를 면담하고 제안된 전원을 검토할 기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청으로 입원한 18세 미만의 자발적 환자는 환자, 환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원(transfer)할 수 없습니다. 단, 제안된 전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가 3일 전까지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에 제공되고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가 환자를 면담하고 제안된 전원을 검토할 기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는 18세 미만 환자의 퇴원 또는 전원과 관련하여 즉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IV. 일반 정보

A.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는 뉴욕주 법원 행정처 산하 기관으로 정신과 시설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법률 대리를 포함한 보호 법률 서비스, 자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환자는 입원 및 치료에 관한 권리를 통지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독립적인 의학적 소견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정신 병원에는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있습니다. 병원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를 대리하는 자가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 사무소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환자 병동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담당자와 면담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본 병원의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 담당자 연락은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변제

환자는 치료 비용 지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배우자 및 경우에 따라 21세 미만 환자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 보호자 또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탁 기금 수탁자 또는 환자를 위한 자금 수탁자 또는 수취인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용 면제 또는 감액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불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재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p>종합 정신과 응급 프로그램(CPEP) 입원을 위한 자발적 요청</p>	<p>성명(성, 성 계의 이름, 중간 이름 이니셜) _____</p> <hr/> <p>성별(젠더) _____ 생년월일 _____</p> <p>의무 기록 번호(MRN) _____</p> <p>장소/시설 _____</p>
--	---

파트 A - 자발적 CPEP 입원 신청

파트 A는 반드시 자발적 CPEP 입원 상태를 신청하는 18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의 법적 보호자, 18세 이상(over 18)인 자의 법원 지명 보호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진료 기준에 부합하는 미성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입원

본인은 자발적 CPEP 입원 상태의 성격에 관해서 안내받았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 _____ 은(는), 이로써 입원을 신청합니다
(성명)

본인, _____ 은(는), 이로써 본인의 돌봄을 받는 당사자인, _____ 을(를)
(보호자 성명) (성명)

_____ (CPEP)에 입원시키고자 신청합니다.
(CPEP 성명)

본인 또는 본인의 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입원 신청 사유: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서명	날짜	시간(오전/오후)
-----------------	----	-----------

파트 B - 의사 확인

본인은 입원 전에 위에 언급된 환자를 검사했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환자에게 CPEP에서의 케어와 치료가 적절한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 환자가 자발적 CPEP 입원 상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 CPEP 케어와 치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최소한 상태 악화를 예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와는 별개로 미성년자가 입원을 원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경우: 해당 치료가 미성년자에게 필요하고 최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의사 서명	날짜	시간(오전/오후)
-------	----	-----------

<p>종합 정신과 응급 프로그램(CPEP) 입원을 위한 자발적 요청</p>	<p>성명(성, 성 계의 이름, 중간 이름 이니셜) _____</p> <hr/> <p>성별(젠더) _____ 생년월일 _____</p> <p>의무 기록 번호(MRN) _____</p> <p>장소/시설 _____</p>
--	---

파트 C – 연장 관찰 병상(EOB)에서의 24시간 초과 자발적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지침: 환자가 CPEP 응급실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 담당 의사 이외의 정신과 의료진 소속 의사가 작성합니다. 자발적 입원 상태(Voluntary Status)로 CPEP EOB에 입원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16세 또는 17세이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내원한 경우, 위 섹션 I.B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어떤 환자도 연장 관찰 병상으로 옮기지 않고 24시간을 초과하여 CPEP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명	날짜	시간(오전/오후)
------------------	----	-----------

본인은 _____ 을(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했습니다
(성명)

해당 검사와 병력을 토대로, 본인은 이로써 환자에게 CPEP 연장 관찰 병상에서의 즉각적인 케어와 치료가 적절한 정신 질환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본 문서에 기재된 사실과 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의 정신과 의료진입니다
(CPEP 명칭)

정신과 의사 서명	날짜	시간(오전/오후)
-----------	----	-----------